

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: 2013년 11월 22일
개정 : 2014년 05월 23일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**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(이하 '위원회'로 칭함)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.
- 제 2 조** 위원회는 정관 제 11조 3항에 의한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를 평의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위원회의 구성

- 제 3 조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.
- 제 4 조**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. 만약 직전 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다른 전임 회장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다른 전임 회장 중에서도 위원장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의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으로 위촉한다.
- 제 5 조** 위원 6인 중 3인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5년 이상의 평의원을 역임한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 선거를 통해 최고득표 순으로 선정하고, 나머지 3인은 분야(기계, 범기계, 건설환경 등)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

제 3 장 위원회의 운영

- 제 6 조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석부회장 후보(들)에 대한 평의위원회 의결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- 제 7 조**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선출이 있는 해의 6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석부회장 선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.
- 제 8 조**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능한 경우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 및 추천 절차

- 제 9 조**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회원을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, 5년 이상의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임원 활동을 역임한 회원 이어야한다.
- 제 10 조** 위원장은 모든 평의원들에게 수석부회장 후보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e-mail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며, 위원회에서는 평의원들로부터 추천된 예비 후보와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예비 후보를 포함하여 전체 예비 수석부회장 후보군을 구성한다.
- 제 11 조** 추천받은 예비 수석부회장 후보는 학회 활동이 포함된 약력과 학회 발전에 대한 비전이 포함된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분야(기계, 범기계, 건설환경 등)를 고려하여 수석부회장 후보를 최종심의 의결한다.
- 제 12 조** 기타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